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·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2021. 12. 2.

기획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·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서민우 의원 등 6명(박종길, 이신자, 배지훈, 김귀화, 윤권근)
- 발의일자: 2021. 11. 19.
- 회부일자: 2021. 11. 19.
- 상정 및 의결: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12. 2.)

### 2. 개정이유

-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의 주민이 달서구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같은 이용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매결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의 주민이 달서구 공공시설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0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·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」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11. 18. ~ 11. 29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의 주민이 달서구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달서구민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하여 자매결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에 공감하며, 실질적인 이용료 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조례에 감면 내용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집행부 검토의견에 따르면,  
구 공공시설에서는 소관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법적 감면대상자 외에도 우수 자원봉사자, 다자녀 가정, 달서구민 등 많은 이용자에게 이용료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음
-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, 시설의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부담 증가로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한정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여가시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이러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 시에 수익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한다면 법적 감면대상자 외 추가로 적용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 **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**

- 최근 도시 간 자매결연은 문화, 관광, 경제 교류 등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매결연 지역주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, 달서구를 홍보하는 데 기여하고 자매결연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.

## 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